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증권팩





안녕하십니까? MG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상성입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힘입어 2013년 5월, 신설법인 MG손해보험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늘 곁에서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객님의 사랑으로 회사는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의, 열정, 도전의 정신이 함께하는 기업, 차별화된 보험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고객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MG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안정된 경영환경 아래에서 고객님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MG손해보험주식회사 기사 사상 서성



-	o 가		
ſ			
	가	가	



MG손해보험준법감시인 심의필 14-088호(2014, 08, 01)

0 0 역 삼 세 무 서 장 후납승인 13년 1020호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우리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② 첨부된 약관의 모든 내용을 잘 읽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입하신 담보종목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꼭 이행하여야 함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후 알릴 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을 반드시 앞이두시기 바랍니다.
- ③ 의무보행(대인배상 I, 대물배상 1천만원 한도)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며 전(前)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에는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되니다.
- ④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연령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 기준이며, 보험종목 및 차종에 따라 연령 가입조건이 상이함)
- ⑤ 온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해당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 (C) 가족과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 및 형제·자매(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 계자녀)
 - (ㄹ)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ロ) 기명피보험자 및 가족이외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기명피보험자 및 계약체결시 회사에 고지한 1인의 운전자
 - (ㅂ) 기명피보험자 및 가족내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기명피보험자 및 계약체결시 회사에 고지한 기명피보험자 가족내 지정1인
- ⑥ 유상운송을 하는 다인승전방·비전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채버스)가 유상 운송 위험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⑦ 자기차량손해 보장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⑧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동일 피보험자 명의로 2대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장은 한 대만 가입해도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두 대 이상 차량에 중복가입하면 보상한도는 확대되나 중복보상은되지 않습니다.
- 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자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 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 배우자는 이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 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①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사항 및 기타 우리회사에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우리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으로 가입하신 경우 두 번째 이후 분할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안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 배상 |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된 후에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②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약정된 일자에 보험료를 이체 하며(이체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에 이체함)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까지 약정이체일자 다음의 아래 이체일자에 이체청구를 시도합니다. (자동이체일자 : 5일, 11일, 15일, 21일, 25일, 말일)
- ③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등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우리 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④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악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차약보험료를 납입한 때에 한하여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용도,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우리회사에 알리고 우리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 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게됩니다. 다만,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한니다.
- ⑥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자동차에 당연히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나. 다이렉트업무용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공작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관용 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1,도로주행 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 특별약관 포함)
- ⑦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소변경을 통보 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합니다.
- ⑧ 책임보험(대인배상 I)보험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서 정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사업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gcar-direct.com

DRECT 1644-0114

예금자 보호 안내

- 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 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2.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3.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호 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익 제공행위 금지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위반신고센터(금융감독원)

TEL: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TEL: 1588–3311

인터넷: www.fss.or.kr 내「인터넷보험범죄신고」

자동차보험 청약서



	가 :
1	



이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잘 읽고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 상기 청약내용(지압, 주소, 용도 피보함자동차 관련사항등)이 사실과 다를경우, 사고시 보상받지 못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며, 자동이체계약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의 계좌 또는 지정한 계좌에서 이체함을 동의하며, 또한 청약서 뒷면의 '개안시용정보의 처리 동의사'에 동의합니다. 특히 운전자연령 만간세이상, 만24에이상, 만26세이상, 만26세이상, 만30세이상, 만43세이상, 만43세이상, 만48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험범위미만의 사람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운전자연령은 만나이 기준입니다) 보험사가(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응주 - 무만하운전, 처랑 · 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①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정보동의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 및 제공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분쟁 대응, 보험사기 조사, 보험모집질서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의무 이행
- 그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정보,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피보험차량 비운행약정 정보, 주행거리정보 포함) 보험금지급 관련정보(피보험차량정보, 사고정보, 가족관계증명서류 진료내역(기왕병력 포함) 소득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상의 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등)
- 계좌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 신용카드정보(소유자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보험업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피 보험차량정보,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 · 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사고
-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기조사
- □ 조회동의 유효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조회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 기관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보험회사 등 :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재(설계사 · 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긴급출동업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 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 · 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구상금분쟁심의업무
-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mggeneral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질병 · 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 처리	동의함 🗌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일증권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은 이 동의서로 동일증권의 다른 보험계약 모두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인)	피보험자 :	(인)	법정대리인1:	(인)
보 조:	(인)	최 저:	(인)	법정대리인2:	(인)
모 집 인 :			모집인코드 :		

- 1.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 무보험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2. 의무보험(대인배상 I ,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 L)보험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대인배상 | 및 대물배상 제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표준양식에 따라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개요 가입설계번호: 보 험 회 사 집 모 자 보 험 상 품 보 험 기 간 피보험자동차 보험계약관계 보험료납입기간 보 가입담보 험 계 약 조 특별약관 건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전문보험계약자' 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기입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고객은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A동 4층 MG고객센터(1588-5959)
- ▷ 가까운 영업점주소 : 전국 지역단 및 보상센터 현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나.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시어 계약 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 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제2회 이후 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납입최고기간)안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대인배생 및 대물배상)을 제외(단, 영업용은 포함)한 보험계약은 이 기간이끝나는 날의 24시부터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주요보장 내용

구 분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유의사항	가입유무
,	10.11		11-1/10	보험료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사망: 최고한도 1억원 최저한도 2천만원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후유장해: 최고 1억원 한도내 후유 장해등급별 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영업용은 1억원까지 의무보험 가입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1사고당 최고한도	의무보험 (1천만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사 망 / 부 상 / 후유장해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사 망 / 부 상 / 후유장해	가입금액 한도 대인 - 배상II 기준지급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 1인당 최고한도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차량가액기준 가입 - 금액한도내로 보상	
기타 특약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약관참조		
조이카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총보험료		초회보험료		